

제 245회 정례회
2005년 12월 23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연기봉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5년 12월 5일

나. 회부일자 : 2005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신설 등 중선거구제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개정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제2조)

○ 현행 155명을 ⇒ 131명으로

다.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 제3조)

○ 총 150개소를 37개소로

- 2인 선거구 : 7개소

- 3인 선거구 : 20개소

- 4인 선거구 : 10개소

5. 검토내역 및 의견

가. 조례 개정이유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는 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가 감축되어 시·군별 의원정수와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군의원 정수는 동법 제23조에서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약칭함)가 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하되 동법 제26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9월 23일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어, 이를 도지사안으로 확정하여 12월 5일 도의회에 제출하였음.

나. 의원정수 책정

시·도별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바 우리 도의 시·군의원 총정수는 13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155명에서 15.5%인 24명이 감원된 것으로 중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된 조치로 판단됨.

그리고 시·군별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 정수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책정 기본방향을 현의원 수 보다 증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하에 인구비율 30%와 읍·면·동 비율 70%를 적용하되, 읍·면수가 9개 이상인 군에 1명을 추가배정하여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시·군별 의원정수를 책정하였음.

그러나 개정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군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더라도 의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는바 이는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 법적인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선거구 획정

시·군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인구·행정구역·地勢·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하고,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며 하나의 읍·면·동은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분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중선거구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아니하고 5명 이상부터 분구하기로 하며, 도·농통합 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를 읍·면과 동으로 분리하고, 청원군과 옥천군은 인구수와 읍면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조례안 별표2와 같이 37개의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획정하였음.

선거구 획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투표권에 대

한 평등성과 경쟁자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것임.

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시·군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되,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일부 4인선거구의 경우에는 지세·교통·생활권역과 도의원선거구와 시군의원선거구가 동일한 점 등 다소 쟁점이 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선거구획정 기준 중 청원군과 옥천군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라. 기타사항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4조에서 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12월 31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도의회가 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 조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 기한까지도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 붙임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시·군의회 의원정수 책정안
 3.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4.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5.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확정관련 선관위 질의·회답
통보(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4510 · 2005.11.25)

시·군의회 의원정수 책정안

구 분	인구·지역반영 산출			법정소원배정	잔여의석배정	조정	의원정수획정			현재의원수	증감
	인구수의 읍면동수의	30% 70%	계				정수	지역	비례		
계	1,489,927 153	39.30 91.70	131.0	28	103	32	131	114	17	155	△24 (15.5)
청주시	628,937 29	16.59 17.38	34.0		32	26	26	23	3	28	△ 2 (7.1)
충주시	206,619 25	5.45 14.98	20.4		19		19	17	2	24	△ 5 (20.8)
제천시	138,728 17	3.66 10.19	13.8		13		13	11	2	15	△ 2 (13.3)
청원군	119,921 14	3.16 8.39	11.6		11	1	12	10	2	14	△ 2 (14.3)
보은군	37,591 11	0.99 6.59	7.6		7	1	8	7	1	11	△ 3 (27.3)
옥천군	56,016 9	1.48 5.39	6.9	7		1	8	7	1	10	△ 2 (20.0)
영동군	52,084 11	1.37 6.59	8.0		7	1	8	7	1	11	△ 3 (27.3)
증평군	30,639 2	0.81 1.20	2.0	7			7	6	1	7	-
진천군	60,227 7	1.59 4.20	5.8	7			7	6	1	7	-
괴산군	39,030 11	1.03 6.59	7.6		7	1	8	7	1	11	△ 3 (27.3)
음성군	85,894 9	2.27 5.39	7.7		7	1	8	7	1	9	△ 1 (11.1)
단양군	34,241 8	0.90 4.79	5.7	7			7	6	1	8	△ 1 (12.5)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선거구

시도	기초의원수 (명)			기초의원 선거구			
	총정수	비례대표	지역구	계	4인	3인	2인
계	2,888	375	2,513	906 (2,513)	161 (644)	379 (1,137)	366 (732)
서울	419	53	366	157	4	44	109
부산	182	24	158	62	6	22	34
대구	116	14	102	32	11	16	5
인천	112	15	97	32	9	15	8
광주	68	9	59	19	6	9	4
대전	63	8	55	17	5	11	1
울산	50	7	43	16	-	11	5
경기	417	53	364	139	9	68	62
강원	169	23	146	48	11	28	9
충북	131	17	114	37	10	20	7
충남	178	26	152	54	12	20	22
전북	197	24	173	53	23	21	9
전남	243	32	211	66	25	29	12
경북	284	37	247	87	18	37	32
경남	259	33	226	87	12	28	47

자료) 행정자치부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6	29	628,937	7	23	
청주시 상당구	제1선거구	소 계	102,142	청주시 가	4	
		중 양 동	8,145			
		우 압 동	15,687			
		내 덕 제 1동	12,921			
		내 덕 제 2동	14,664			
		울량·사천동	46,175			
		오 근 장 동	4,550			
	제2선거구	소 계	154,113	71,829	청주시 나	3
		성 안 동	8,932			
		탑대성동	13,420			
		금 천 동	36,691			
		용담·명암·산성동	12,786	82,284		
		영 운 동	13,711			
		용암제1동	38,847		청주시 다	3
용암제2동	29,726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청주시 홍덕구	제3선거구	소 계	93,285	청주시 라	3
		사직제1동	10,298		
		사직제2동	10,749		
		사 창 동	16,028		
		모 충 동	22,415		
		성화·개신·죽림동	33,795		
	제4선거구	소 계	88,880	청주시 마	3
		수곡제1동	19,785		
		수곡제2동	20,726		
		산·미·분장동	48,369		
	제5선거구	소 계	105,080	청주시 바	4
		운천·신봉동	23,177		
		복대제1동	37,050		
		봉명제1동	13,274		
		봉명제2동·송정동	26,974		
		강서제2동	4,605		
	제6선거구	소 계	85,437	청주시 사	3
		복대제 2동	23,364		
		가 경 동	42,861		
		강서제 1동	19,212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25	206,619	6	17	
충주시	제1선거구	소 계	100,260	18,027	충주시 가	3
		주 덕 읍	6,528	충주시 나		
		살 미 면	2,395			
		수안보면	3,787			
		이 류 면	5,317			
		신 니 면	4,120	14,682	충주시 나	2
		노 은 면	2,670			
		양 성 면	4,903			
		가 금 면	2,989	충주시 다	4	
		성내충인동	3,870			
		지 현 동	6,217			
		문 화 동	13,398			
		호암직동	9,658			
		달 천 동	5,085			
		봉 방 동	9,425			
	칠금·금능동	19,898				
	제2선거구	소 계	106,359	18,133	충주시 라	3
		금 가 면	4,348	충주시 마		
		동 량 면	4,600			
		산 척 면	3,027			
		엄 정 면	4,027			
		소 태 면	2,131	충주시 마	3	
		교현·안림동	21,675			
교현 2동		10,818				
용 산 동		15,552	충주시 바	2		
연 수 동		33,367				
목행·용탄동	6,814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17	138,728	4	11	
제천시	제1선거구	소 계	80,390	18,113	제천시 가	2
		봉 양 읍	8,631	제천시 나		
		백 운 면	3,482			
		송 학 면	6,000			
		고암 · 모산동	9,468	62,277	제천시 나	4
		중앙 · 의림 · 명동	8,210			
		용 두 동	14,288			
		청 전 동	22,809			
		서부 · 영천동	7,502			
	제2선거구	소 계	58,338	9,563	제천시 다	2
		금 성 면	2,415			
		청 풍 면	1,394			
		수 산 면	2,283			
		덕 산 면	2,610			
		한 수 면	861	48,775	제천시 라	3
		교 동	16,592			
		남천 · 도현동	7,749			
		신백 · 두학동	15,279			
		화 산 동	9,155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14	119,921	4	10	
청원군	제1선거구	소계	46,877	27,225	청원군 가	3
		낭성면	2,493	청원군 가		
		미원면	6,247			
		가덕면	4,819			
		남일면	8,186			
		문의면	5,480	청원군 나	2	
		남이면	7,274			
		현도면	4,477			
	부용면	7,901				
	제2선거구	소계	73,044	41,233	청원군 다	3
		내수읍	23,334	청원군 다		
		오창면	11,388			
		북이면	6,511			
		강내면	10,153	31,811	청원군 라	2
강외면		10,103	청원군 라			
옥산면		11,555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11	37,591	2	7
보은군	제1선거구	소 계	25,470	보은군 가	4
		보 은 읍	16,028		
		내속리면	2,497		
		외속리면	1,580		
		마 로 면	3,054		
		탄 부 면	2,311		
	제2선거구	소 계	12,121	보은군 나	3
		삼 승 면	2,874		
		수 한 면	2,131		
		회 남 면	817		
		회 북 면	2,227		
		내 북 면	2,028		
		산 외 면	2,044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9	56,016	2	7
옥천군	제1선거구	소 계	36,047	옥천군 가	3
		옥천읍	30,251		
		군서면	2,654		
		군북면	3,142		
	제2선거구	소 계	19,969	옥천군 나	4
		동이면	3,603		
		안남면	1,725		
		안내면	2,345		
		청성면	2,892		
		청산면	4,148		
		이원면	5,256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11	52,084	2	7
영동군	제1선거구	소 계	31,650	영동군 가	4
		영 동 읍	21,341		
		양 강 면	3,687		
		용 화 면	1,002		
		학 산 면	3,361		
		양 산 면	2,259		
	제2선거구	소 계	20,434	영동군 나	3
		용 산 면	3,885		
		황 간 면	5,091		
		추 풍 령 면	2,773		
		매 곡 면	2,180		
		상 촌 면	2,629		
		심 천 면	3,876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2	30,639	2	6
증평균	제1선거구	증평읍	27,852	증평균 가	4
	제2선거구	도안면	2,787	증평균 나	2

총계	2	7	60,227	2	6
진천군	제1선거구	소 계	32,329	진천군 가	3
		진 천 읍	25,956		
		문 백 면	4,161		
		백 곡 면	2,212		
	제2선거구	소 계	27,898	진천군 나	3
		덕 산 면	6,018		
		초 평 면	3,955		
		이 월 면	8,215		
		광혜원면	9,710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11	39,030	2	7
괴산군	제1선거구	소계	24,507	괴산군 가	4
		괴산읍	9,107		
		감물면	2,108		
		장연면	2,176		
		연풍면	2,907		
		칠성면	2,969		
		소수면	1,953		
		불정면	3,287		
	제2선거구	소계	14,523	괴산군 나	3
		문광면	2,112		
		청천면	5,333		
		청안면	3,744		
		사리면	3,334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9	85,894	2	7
음성군	제1선거구	소 계	29,543	음성군 가	3
		음성읍	17,620		
		소이면	3,594		
		원남면	3,462		
		맹동면	4,867		
	제2선거구	소계	56,351	음성군 나	4
		금왕읍	19,113		
		대소면	14,038		
		삼성면	7,614		
		생극면	5,032		
		감곡면	10,554		

선거구	도의원선거구			시군의원선거구	
	선거구명	지역명	인구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총계	2	8	34,241	2	6
단양군	제1선거구	소 계	18,562	단양군 가	3
		단 양 읍	12,100		
		대 강 면	2,093		
		적 성 면	2,782		
		단 성 면	1,587		
	제2선거구	소 계	15,679	단양군 나	3
		매 포 읍	7,680		
		가 곡 면	2,099		
		영 춘 면	3,878		
		어상천면	2,022		